

천안시장애폐인체육회 공고 제2025-22호

2025년 천안시장애폐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수정)공고

천안시 장애인생활체육을 선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유능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천안시장애폐인체육회장

1. 채용인원

응시분야	채용인원	근무 지역	채용 희망종목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	천안시	특수체육 등 다종목

2.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채용 공고일 현재)

- 천안시장애폐인체육회 사무국 인사규정 제21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기준일: 채용 공고일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필히 갖춘자

○ 조건부 채용 자격요건(기준일: 채용 공고일 현재)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5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2급
-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 건강운동관리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 조건부 채용의 경우 2회차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및 가점

가점대상		우대사항		
		1차	2차	3차
가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특수)교육과·체육교육과), 특수체육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10%	10%	-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	5%	-	5%
라	국제대회 입상자	10%	-	10%
마	청년층(만 34세 이하),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노숙인)			
바	(장애인)국가대표 출신	15%	-	15%

3. 신분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 채용인원: 2명
- 신 분: 계약직(휴직직원 대체)
- 계약기간: 2025년 5월 19일 ~ 2026년 5월 18일(휴직 기간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보 수
 - 기본급: 월 2,595,000원(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수 당: 여비(월100,000원), 복지비(연300,000원), 활동비(월200,000원), 정액급식비(월14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 50%-연 2회), 장기근속·자격수당 및 가족수당(해당자)

4. 주요업무

-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기획 및 보급(홍보)·지도
- 연간, 분기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 작성
- 지도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 업무
-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 지도

5. 채용방법

구 분	결정방법	비고
1차	○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 ※ 선발 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전원 합격	서류심사
2차	○ 지도 종목 수업 지도계획서 작성 및 발표(50점)	면접심사
3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50점)	

6. 합격자 결정

- 2차(지도계획서) 및 3차(적성면접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1. 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면접심사위원회의 결정자
- 2차 ~ 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① 지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부 ⑤ 수업지도계획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사항 포함) ⑦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해당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일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류) 1부 ② 경기실적증명서 1부(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 - 국제·국내 대회 입상실적 포함 ③ 선수등록확인서 1부(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 ④ 장애인 국가대표 증명서 1부(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 ⑤ 가산특전(‘마’ 항목) 해당 서류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합격자	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건강진단서(의료기관발행)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8. 서류접수

- 원서교부: 본회 홈페이지(<http://www.casad.or.kr/>)에서 내려받기
- 접수일자: 2025. 5. 12.(월) ~ 2025. 5. 13.(화) / 17: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04-38(유량동 243-1)
천안반다비체육센터 4층 사무실
- 전자우편접수: yoo@casad.or.kr

9. 시험일정

- 2025. 4. 28.(월) ~ 2025. 5. 11.(일): 채용공고
- 2025. 5. 12.(월) ~ 2025. 5. 13.(화): 서류접수
- 2025. 5. 14.(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2025. 5. 15.(목): 2차 면접시험(예정)
- 2025. 5. 16.(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19(월): 계약체결
- 2025. 5. 19(월): 근무시작
 - ※ 시험일정은 천안시장애평인체육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10. 문의처

- 천안시장애평인체육회 기획총무팀(Tel. 041-522-0014)

11. 기타 사항

- 모든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에 의함.

(붙임 1)

결 격 사 유

○ 천안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사규정 제21조(자격제한)에 의한 사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의한 사항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